



의안번호	제37호
회의 연월일	2025. 4. 7. (제561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5. 4. 1.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란 다음에 '64의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제44조제5항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	---------	-----------------------------------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